

서울남부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13959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7. 11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오광호	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4.03.04. 가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6. 3. 18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양민경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1.12.20 ~	200,000,000			2021.12.20	2021.11.19	
주택도 시보증 공사	4층 302호 전부	권리신고	주거 주택임 차권자	2021.12.20 ~ 2023.12.20	200,000,000			2021.12.20 (양민경)	2021.11.19	2026.3.13.
<비고> 양민경: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4.01.29.임 주택도시보증공사: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주택임차권자 양민경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함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 - 임차인 양민경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,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										

※ 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13959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0-14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나길 61-17

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 5층 다세대주택
1층 11.96㎡
2층 165.93㎡
3층 163.59㎡
4층 149.45㎡
5층 128.22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4층 제302호
철근콘크리트조
44.96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0-14
대 310.1㎡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310.1분의 25.19

감정평가액		200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8.19	200,000,000	20,000,000
2회	2026.09.22	160,000,000	16,000,000
3회	2026.10.30	128,000,000	12,800,000
4회	2026.12.04	102,400,000	10,240,000
-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 기 조건 매각			